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413호
----------	-------

2016. 7. 20.(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6월 29일
- 회부일자 : 2016년 6월 30일

다. 상정일자 : 2016년 7월 13일

-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16.12.26.)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16. 12. 27 ~ ' 19. 12. 26)
- 위 치 : 충청북도 소재
- 수탁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 現 수탁기관 : 충북대학교 병원(센터장 이상수, '13. 12. 27 ~ ' 16. 12. 26)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 업 비 : 589백만원(국비 70%, 도비 30%) *연도별 변동가능
- 위탁 주요사무
 - 치매관리사업 계획, 치매 연구 및 조사
 -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치매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 치매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 법적 근거 및 동의안 내용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정함.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0일간 선정공고를 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기관의 전문성, 사업 실적, 사업계획 충실도 등을 심사한 후 선정된 뒤, 3년의 범위 내에서 협약 체결 및 공증 절차를 거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이는 법령에 따른 절차 및 내용으로 타당함.

○ 종합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민간 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임.
- 광역치매센터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치매연구 및 조사, 치매 관련 종사인력 교육, 치매상담 등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를 민간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위·수탁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치매유병률(‘15)을 보면, 충북의 경우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6%가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9.8%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군 보건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충청북도 치매관리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광역치매센터의 역할은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이에, 충북도에서는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도 수탁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권 및 행정적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 충청북도 치매환자 관리 현황

(단위 : 명)

시군명	치매환자 등록인원	시군명	치매환자 등록인원
총 계	9,636		
청주시 계	2,315	기타 시군계	7,321
상당구	593	충주시	1,403
서원구	621	제천시	720
홍덕구	505	보은군	834
청원구	596	옥천군	795
		영동군	1,024
		증평군	382
		진천군	733
		괴산군	558
		음성군	594
		단양군	278

※ 충청북도 유병율(10.6%) 대비 추정 환자수 : 23천명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충북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충북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16.12.26.)됨에 따라 지역치매 예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기관을 선정,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공개모집 / 민간위탁(3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

I.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II. 위탁개요

- 위탁 기간 : '16. 12. 27. ~ '19. 12. 26.(3년)
 - 위탁 범위 : 충북 광역치매센터 운영 전반
 - 위탁 방법 : 공개모집(병원급 의료기관)을 통한 민간위탁
 - 위탁사업비: 589백만원(국비 70%, 도비 30%) *연도별 변동가능
 - 위탁 사무
 - 치매관리사업 계획, 치매연구 및 조사, 치매 관련 종사인력 교육
 -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기술지원,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 ※ 現 수탁기관 : 충북대학교 병원(센터장 이상수, '13. 12. 27 ~ '16. 12. 26)

III. 추진체계 및 절차

① 기본계획	• 기본계획 수립	'16. 6월
② 의회동의	• 민간위탁 의회동의(7월 회기중)	'16. 7월
③ 수탁공고	• 수탁기관 공고 - 방법 : 공개모집(90일 공고) - 자격 : 병원급 의료기관	'16. 7~10월
④ 수탁심사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구성 : 6~9명 정도 - 심사 :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 - 결정 : 최고 득점자 선정	'16. 11월
⑤ 협약공증	• 협약체결 및 공증	'16. 12월
⑥ 사무개시	• 위·수탁 사무개시	'16. 12. 27

IV. 세부추진계획

① 수탁기관 선정공고

- 공고기간 : '16. 7 ~ 10월(90일)
-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 위탁조건
 - 보조사업비의 추가지원 없음, 복지부 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침 적용
 - 사업공간확보 및 임대운영시 임대보증금 수탁기관에서 부담

②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개최시기 : '16. 11월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준용
 - 구성인원 : 6~9명정도(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 당연직 3(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기타(전문가) 위촉
 - 심사항목 : 신청기관의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 충실도 등
- 계획설명 : 공모기관별 각 20분 이내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결정(고득점자 선정)

③ 협약체결 및 공증

- 체결 시기 : '16. 12월
- 내용 :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 업무 인계·인수

V.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6. 7월
- 수탁기관 선정공고 : '16. 7~10월(90일)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6. 11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16. 12월
- 위·수탁사무 개시 : '16. 12. 27

관계법령 발취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 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관 만료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 연장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 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